

보조금 신청접수 중단 및 보조금(화재·폭발 및 폭염 선지급 시행

□ **재원대비 초과 자금결정으로 보조금 신청·접수 중단**

- 중단일시: 2020.11.13.(금) 18시 이후부터
 - ※ [온라인] 11.13. 18시 신청·접수 전산 폐쇄예정, [오프라인] 민원신청일 기준 도착(방문 또는 우편) 사업장에 한함.
 - ※ 화재·폭발 예방 보조지원 이외 보조지원사업은 일부 일선기관에서 사전 공지하여 중단되었거나 중단일 이전에 중단될 수 있음.
- 중단제외대상: 콜센터 등 3밀 사업장 방역물품 및 필수노동자 근무 환경개선 보조지원(오프라인 신청만 가능)

□ **보조금 선지급 시행**

- 대상 : 화재·폭발 및 폭염 예방품목 자금결정 사업장
- 시기 : '20.12월 보조금 지급요청일 까지
 - ※ 클린 보조금 재원이 소진될 경우에는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음.
- 가능금액 : 사업장 당 보조 결정금액의 70% 범위 내
- 방법 : 선지급 지급 관련 서류*를 자금결정한 공단 일선기관에 제출
- 제출서류
 - 산재예방시설 착수금 지급신청서(필수) ※ 붙임1 참조
 -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(필수)
 - 이행보증보험 증권 1부(필수)
 - 계약기간*: 선지급 요청일 이전일~사후관리기간(3년 or 5년)으로 적용
 - * (선지급 요청일 이전날짜)약정일 ~ 2024.12.31.까지(또는 2026.12.31.)
 - ※ 다만, 금년 내 투자완료확인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6개월 단축 가능
-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(보조금을 공급업체 위임하는 경우)
 -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) 1부
 - 위임받는 설비설치자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 - 위임받는 자의 입금 희망통장 사본 각 1부